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10. 16.(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44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44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 (2014-45-16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방송광고산업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위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및 역할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위원회 위원은 방송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방송사업자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한국방송협회 2인, 유료방송사업자 및 한국케이블TV협회 3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인 등 총 8인으로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률·광고 전문가를 2인 추천키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사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운영방안입니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문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타부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시 방송사업자 등 실무책임자들로 지원반을 구성하여 전문위원회를 지원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10월 중으로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및 구성, 그리고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님,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해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치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현재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정위원회 외에 우리가 법에 근거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없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특별히 전례가 없는 이러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안전을 보면 역할이 설명되어 있지만 굳이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광고산업이 가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미가 특별하고, 지금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정책 개선방향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특

히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광고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 설치를 합시다만 실제로 보면 지난 8월 4일, 저희가 발표한 '제3기 정책비전 및 주요정책 과제' 이것에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검토가 포함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발표한 다음에 종편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신문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에 대한 저희 쪽의 입장이라고 할까,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려서 정책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지난번 제3기 정책과제 발표는 저희들이 그전까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어느 정도 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팎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해야 할 때 씨를 뿌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해 주십시오. 또 어제 논의의 한 축인 지상파방송사로 구성된 방송협회에서는 '공정하게 구성해야 공정하게 운영된다' 이런 제목의 성명서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팎의 지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통위 설치법상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든 것은 제가 과거에 법안 검토를 할 때 논의에 참여해 봐서 아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FCC 같으면 로이어(lawyer)나 이코노미스트(economist)나 많은 스탠프진들의 보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실질적으로 받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이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지금까지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이런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더 일찍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큰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려면 법률부터 시행령, 고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령의 개정 내지는 보완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전문위원회의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자문이나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어드바이스(advice)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의견이나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성방안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것은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그다음에 '방송사업자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통위의 수많은 법정위원회가 한 2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또 임의로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나 때로는 TF, 그리고 이번과 같은 이런 전문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마다 외부의 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추천을 꼭 받아야 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다섯 분의 위원들이 나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문이나 실무적인 의견을 듣는 그런 위원회에서 매번 이해관계자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정성 내지는 배분 개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그 내용에 대한 퀄리티(quality)보다 형식적인 논의구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몰입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본질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위원회에서 여기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특정 사업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선별적으로 리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숫자적으로 내지는 어느 특정 단체에서 추천했으면 또 다른 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이런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안 썼으면..., 비단 이 전문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저희 방통위에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든 그런 형식적인 포맷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논의와 신경을 안 썼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간담회에서 1차 거른 것입니다만 일단 전문위원회의 틀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추천을 의뢰했고 추천을 받아서 구성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직접민주정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회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시트(seat), 참여폭이고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제3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했을 때 제일 크게 논쟁이 붙은 것이 방송광고 규제 완화인지, 개선인지 하는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 쪽과 유료방송사 쪽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이해가 첨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에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의결하려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발표했던 방송광고 개선안이 유료방송 쪽의 비판을 받아서, 종편을 경영하는 신문사들도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고치기 위한 전문위원회인지, 아니면 그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광고 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꾸린 전문위원회인지 혼동을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자가 아니냐? 방통위가 종편을 비롯한 유료방송 쪽으로 비판을 많이 받더니 그쪽으로 또 기울어 가는,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매우 큼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한국 방송의 역사나 전통이나 영향력으로 봤을 때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비교할 때 과학적으로 비교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2:3으로 하는 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서울 중앙 지상파 말고도 각 지역별로 민영방송사, 지역방송사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해당사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된 직접민주정치의 모델이기 때문에 최소한 동수로 하거나 아니면 저는 지상파 쪽의 무게가 아직까지는 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방송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케이블방송은 오래 되었고, 위성방송은 그다음이었고, IPTV 그다음이었고, 종편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지상파방송은 매우 오래된, 국민에게 친숙한 방송입니다. 무료 보편 서비스입니다. 전문위원회에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전문위원회는 결국 방송광고를 둘러싼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언론은 그것을 쓸 것입니다. 결정된 뒤에 쓰지 않습니다. 논의과정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차의 정당성의 문제인데 양쪽의 비중을 동등하게 해 주는 것이 직접민주정치의 모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거듭 말씀 드리는데 수정안을 정식 제안합니다. 아까 고삼석 위원님께서 방송협회, 이것이 지상파방송 쪽인데 한국방송협회 쪽의 성명서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 드린 것처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숫자는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여기에서는 정말 배경, 자문, 전문지식을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논쟁을 벌여야 할 당사자, 양 이해관계자들의 수를 맞춰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필요합니다. 숫자에 관해서만...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좀전에 추가적인 의견수렴, 그다음에 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 2페이지를 보시면 구성에 '전문위원회 위원은 한국방송협회 2인, 유료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TV협회 3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인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수렴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유료방송 쪽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한다는 판단이 있다면 이런 구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료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협회', 저는 유료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한국케이블TV협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 자체가 구성에 있어서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념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결하더라도 구체적인 구성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지금 제3기 정책과제...

○ **이기주 상임위원**

- 무슨 결정을 합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결정이 아닙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무엇을 합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말씀 드리면 순수하게 자문기구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된 결정을 하실 때 그것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저희가 제3기 정책과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각종 법령 개정작업을 해야 하는데 개정작업을 하려면 <보고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고, 그 전·후로 거기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론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정된 것을 가지고 입법예고가 됐든 행정예고가 됐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의견수렴 과정이 앞으로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전문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저희에게 어떤 자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A안>이고, 소수가 <B안>이든 저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8명이든 9명이든 5명이든 각각의 의견이 무엇인지만 제가 의사결정하는 데 참고만 할 뿐이지, 여기에서 '다수의견이 무엇이다', '소수의견이 무엇이다' 저는 이런 형태의 전문위원회 운영은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두 분 위원님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전문위원회 운영 취지를 저는...,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특히 이 전문위원회에서 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를 안 두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한국방송협회 2인, 유료방송사업자 3인인데 한국방송협회 3인, 유료방송사업자 3인 이렇게 하면 구성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왜 이렇게 2:3으로 구성했는지 그 근거를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권한이 있건 없건 법률과 제도적인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과 언론과 정치 과정에서는 토론, 논쟁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2:3으로..., 이것은 한국방송협회 쪽에 핸디캡을 주는 그런 무대가 될 수밖에 없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등하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결정권은 없다 하더라도, 의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론에게 굉장히 많이 전달되고 매우 중요한 논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 평등의 원리를 적용해서 맞춰주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권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잠깐 말씀 드리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입장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브(naive)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업자가 추천을 하지만 교수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자의 이익을 극명하게 대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률·광고에 관한 전문가를 2인 추천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균형을 맞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잠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자문이나 사전검토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사안으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전문위원회가 스스로 어떠한 안건을 찾아서 검토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자문이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안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KISDI에서 광고총량제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 의미에 대해서 광고전문가들로부터 일단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11월 중에 지상파의 광고총량제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임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광고제도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 자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전문가 1인과 법률전문가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광고전문가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위원 구성을 8인으로 한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어떤 표 대결을 해서 무슨 결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이기주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개별적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김재홍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국방송협회는 2인이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한국케이블TV협회는 3인이라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지금 광고총량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방송협회와 그다음에 종합편성PP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SO나 PP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료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TV협회 3인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한국방송협회 2인, 또 유료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TV협회 2인으로 수를 같이 하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도 고민을 한 끝에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측과 그다음에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되고 있는 방송협회와 그다음에 종합편성 PP 사이에는 인원을 맞춰 주는 것이 우선 시작단계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 또는 지금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늦어도 10월 이내에는 아까 말씀 드렸던 지상파 광고총량제의 효과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시킨 이후에 11월 중에 저희가 광고총량제에 대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계획을 하고 있었던 이런 절차들이 지연되거나 그러한 일은 없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하고자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이 이어지는 것은 초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2:3으로 했는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카테고리를 지상파 무료 보편서비스와 유료방송으로 나누어서, 또 방송광고..., 지금 이 주제인 그것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양 영역 간에 벌어지고 있으면 그렇게 봐야 할 것이고, 유료방송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그 아래의 카테고리입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해당사자들에게 듣는 의견청취가 있지 않습니까? 진술을 듣는, 그것보다 훨씬 더 법적 근거도 갖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고 지속적인 이런 제도입니다. 의견청취를 한다 하더라도 양쪽을 동등하게 들어야 할 텐데 훨씬 더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위원회를 꾸리면서 이렇게 균형에 안 맞게 하면 이것은 두고두고 말썽이 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권한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위원회라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논리도 서지 않습니다. 양쪽을 맞춰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한국방송협회 3인, 유료방송 3인으로 하면 구성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료방송 1인을 하나 빼든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구나 당사자인 한국방송협회가 오늘 아침에 성명까지 발표했다면 우리는 이해당사자 쪽 의견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해줄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한국방송협회 성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득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설득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방송을 크게 지상파와 유료방송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기재한 것은 유료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TV협회 3인으로 표시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카테고리를 각각의 광고에 관한 이해관계로 나누면 또 달리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협회가 2인이고, 그다음에 유료방송케이블TV가 3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게 구성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료방송과 케이블TV협회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을 나누어 본다면 제가 보기에 균형 면에 있어서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문위원회 구성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청취하는 과정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책과제에서 공표를 했던 광고총량제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전문위원회를 가동해서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관한 효과분석을 빨리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문제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이와 같은 구성으로 운영을 하다가 효과분석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 결정으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성하면 반드시 임기 내에 절대로 변동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지금 빨리 추진해야 하는 업무를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만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 또 보완조치를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구성을 3명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유료방송 쪽에 여러 종류의 방송사업자가 있다고..., 제가 지상파 쪽 방송협회 쪽을 대변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방송광고를 둘러싸고서는 지역의 민방들이 더 할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KBS, MBC입니다만 서울에 공영과 반공영이 있고, 서울·수도권에 민영이 있고, 지상파방송도 나누어볼 여지가 많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중앙의 지상파방송과 지역민방과 광고배분 문제와 결합판매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그렇게 카테고리 라인에서 한다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대표성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해 보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어서 하기를 거듭 제안합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잠깐 말씀 드리면 물론 광고수입을 중앙 지상파방송사와 지역방송사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앙 3사와 지역방송사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광고제도 규제완화라든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취지를 방송협회와 지상파방송사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하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상파방송협회가 이미 반대성명을 냈는데 우리가 설득을 권유한다면 그것은 정책기구로서 압력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소화해 주는 것이 옳고, 저도 처음부터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김재홍 위원님께서만약에 이와 같이 구성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협회 1인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또 그에 반대되는 쪽에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결정하는 것과 전문위원회 구성이 된 상태에서 자문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광고총량제를 결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에 대한 것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잘못 구성된 전문위원회보다는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기울어진 구성논리를 가진 전문위원회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보다는 없는 것이 낫고, 제대로 만들어진 전문위원회라야 자문의 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상파 방송협회 쪽을 3명 한다고 해서 유료방송 쪽이 참여하지 않겠단가 다른 이견을 제외한다? 그러면 더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단...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전문위원회 구성권을 가진 방통위가 의결했다는 것, '논리적으로 우리 자체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이해당사자 한쪽의 주장만을 참고하거나 강요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옳지 않지요. 지금 얼마나 대립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구성을 하고요.

○ 최성준 위원장

- 한국방송협회를 설득해서 그쪽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책기구로서 어느 이해당사자 한쪽을 설득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끝까지 반대하면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할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갖춰서 해 주어야 도리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1명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작은 문제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김 국장님, 방송사업자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지상파방송 빼고 위성방송, IPTV...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리고 '케이블방송사업자' ...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몰라서 그것을 물어본다기보다는 한국케이블TV협회 말고, IPTV협회도 있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성방송은 협회가 없습니까? 옛날에 '뉴미디어협회'라고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1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따로 협회는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종편이나 보도PP도 별도로 협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종편과 보도PP는 별도의 협회가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방송사업자들은 케이블TV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종편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케이블TV협회는 SO협의회 있고, PP협의회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PP협의회도 독립PP들이 있고 메이저PP들이 또 있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과 별도로 우리 방통위가 앞으로 의견수렴을 할 때 정말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저희가 직접 법적으로 관할하는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듣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통위 소관이다', '미래부 소관이다' 그것을 넘어서서 얼마 전에 티타임에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관련해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지만 스마트 시대에 전통적인 방송사업자 분류 내에서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저희가 정책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현재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은 광고총량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전문위원회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 정책과제에서 포함된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지금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문제나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된, 포털과 관련된 그런 것까지도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료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TV협회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쪽의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위원님들이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은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견일치를 못했을 경우에 다수의견을 찾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며칠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일단 오늘 논의는 이 정도에서 그치고, 일단 이 안전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고, 다음 주 초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정도의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여기에서 그냥 바로 방송협회쪽 인원을 하나 추가하면 안 됩니까? 2명을 3명으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아까 전에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운영의 묘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고 제도인데, 제도적인 틀을 제대로 갖춰 주어야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할 때 한 가지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제가 지식이나 경험이 이 분야에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 전문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김재홍 위원님 일단 한 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연기하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다시 한 번 논의하고 다음 주 초에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회

설치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늦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다음 주 초에 결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첫 번째 저희가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KISDI에서 하고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의 효과분석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정도의 시간 여유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오는 12월 4일 시행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서 규정하여 위임하고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금지원 제한의 세부기준입니다.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과 관련하여 해당 방송사업자가 특별히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서 600점 미만 획득한 경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성 지수 평가입니다.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절성 등 방송내용·편성 영역과 경영의 적절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 방송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지원 제한입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지역방송사의 기금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기금지원은 세부 제한 기준 심사를 통해 감액 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지원 심사입니다. 지역방송사업자가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방통위는 기금지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금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 대상 기간은 공적 책임 등의 실현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기금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조건부 재허가의 경우에는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지역성 지수 평가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 등은 기금지원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평가 적용 시기입니다. 이 고시는 금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지역성 지수 평가는 '16년도에 실시하는 심사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 드린 이후에 행정예고를 거친 후 11월 중에 규제심사를 받은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안은 다음 안건도 그렇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같이 의논이 된 것입니까, 의견수렴이 된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또 부위원장님과 고 위원님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다 검토를 하셔서 그런지...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안이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법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안 제4조에 '기금지원 제한'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법에 다른 것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안 넣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신청한 분들과 아규(argue)가 있을까 봐 이것을 넣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 지원을 하는 모든 제도가 그러면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고시가 됐든 시행령이 됐든 거기에 다 '예산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넣은 이유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측면이 있어서 들어간 표현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여담입니다만 단통법상 분리공시 문제 때문에 하도 모법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또 거꾸로 이것을 넣으면 다른 모든 경우도 다 이렇게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지역방송에 관한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지역방송사업자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고시 제목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이렇게 해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릴 것은 그저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제언을 했습니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이 센 방송사, 미안합니다만 큰 방송사에게는 관대하고 힘이 없는 방송사, 어려운 방송사, 지역방송 어렵지요. 거기에는 참 엄격하다, 그런데 징수는 어려운 지역방송사는 다 내는데 힘이 있는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방송사는 안 내는 방송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이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방송사 KBS, MBC, SBS, EBS 이런 데는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연간 수억씩 지원받는 종편들도 있습니다. 지역방송들은 경영, 진짜 종편 못지않게 적자도 내고 인건비도 낮고 어렵게 허덕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면서 이 지원 제한기준을 만들면 이것이 또 형평성이 맞느냐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방송발전특위에서 거쳐서 온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운영의 묘를 진짜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고시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 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뒀는데 그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취지로 지역방송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기왕에 있는 것을 완화한다?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 제7조에서 이와 관련된 고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에 관한 적용 규정 부분에서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법에 따른 계획,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3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 초쯤이면 아마 그 계획을 확정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우리가 마련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부분을 빼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 제목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법 자체가 모법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경우는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법 제7조에서 이미 대상과 여러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해하는 데는 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내용을 보면 다 알지만 고시의 제목만 딱 봤을 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아, 이것은 지역방송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기금을 제한하는 것도 이 고시에 다 들어있구나!'라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라고 하면 제목만 봐도 '아, 이것은 지역방송에 대한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과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시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제한기준'이라고 해야 합니까? '지원규정'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지원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잘 안 주겠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것은 법 자체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두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놔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부분만 붙이면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방송사들 간에서 제한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또 하나 참고로 아리랑TV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연간 수백억, 400억원입니까? 350억원입니까? 나간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아리랑TV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제한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종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종편도....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지역방송에 대해서만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지역방송만 하는 것인데 다른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때는 이런 제한기준이 없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알기로는 이 법과는 별개의 규정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에 관한 우리 내부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제한규정은 없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지역방송발전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고시이고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나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상파방송사나 아리랑TV나 또는 종편이나 이런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운용을 정말 균형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지원만 받는 경우는 문제입니다. 아리랑TV가 그렇고, 종편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 푼도 안 내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연간 역대씩 3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고시의 명칭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그렇게 접수를 하시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안 제4조는 그 뒤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의결할 때 한 번...

○ 최성준 위원장

- 제4조는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제가 다른 고시 내용을 다 자세히는 몰라서 다른 고시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고 다른 고시도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을 꼭 다 써 왔으면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데 없다면 이기주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또 잘못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 삭제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아집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잠깐만...

○ 최성준 위원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의문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모체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으니 거기에서 지원을 혹시라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없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권한이 없으면 이 조항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만약 그런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벗어나서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권한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다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매년 기재부나 국회 과정을 거쳐서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 고시하기 위함입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방송 관련 단체를 방송사업자단체·학술단체·비영리민간단체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추천단체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한 단체들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방송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2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학술단체의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단체로 함이라고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 드린 후 행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잠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도 받았고 통신시장이 매우 소란스럽고 국민 불만,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가 반영이 안된 것 때문에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법 자체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 드려서 분리공시만 제대로 됐더라면 보조금이 지금처럼... 처음에는 10만원 안팎, 지금은 15만원, 20만원 주는 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34만 5천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 그 보조금이 지금 제대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더 불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분리공시가 안된 책임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성준 위원장께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도의적인 사과가 있을 수 있고 유감표명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모순된 제도, 모순된 구조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주 옳지 않다, 괴롭습니다. 분리공시가 삭제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삭제 권고안이 내려왔지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 삭제를 주도한 부처는 정부 내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입니다. 소관부처는 방통위원회입니다. 미래부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분리공시가 안 됨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통신시장의 문제 상황과 국민 여론의 비판, 국회의 비판과 질책,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방통위는 그것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토론과 고민을 해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정부 부처 내 기재부와 산자부가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규개위에서..., 규개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고 죄송스럽지만 정부 부처에서 주도해 나가면 대체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수로서 정부 자문기구에 많은 참여해 왔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폰 통신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분리공시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악화된 상황이고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가 질책을 받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 회의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시간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방통위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사과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합의안을 규개위의 심사에 붙였는데 거기에서 부결된 것이고 거기에 부결될 때에는 기재부와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부결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국민들의 비판, 국회의 비판, 질책은 책임소재를 가려서 해야 한다, 이것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께서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관련해서 주로 분리공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붙여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사무처와 같이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관련해서 대책이라고 할까, 향후 조치 방안이라고 할까,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라고 할까, 이런 것을 위해서 티타임도 좋고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내주 초에 한 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제도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을 일부 수렴했고, 또 제가 미래부장관과 만나서 서로 우선 시급히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들에 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종합을 해서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도 다시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 사무국의 직원들, 또 지금 방청을 하시는 기자 분들도 저희들이 분리공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분리공시를 담은 고시안이 규개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해 왔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어쨌든 분리공시 관련 고시의 담당 부처로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일종의 결과책임

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시에서 분리공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분리공시가 빠지게 된 것에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논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단말기유통법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아까 보류한 안건이 있어서 일단 별도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5분 폐회 】